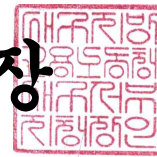


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「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」 제34조, 제35조,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행정 처분(자격취소)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3. 11. 30.

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



1. 건 명: 훈련교사자격증 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통보 공시송달
2. 근 거: 국민평 생 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, 제35조,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: 문○○(70.01.18.)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통보
4. 공고기간: 2023. 11. 30. ~ 2023. 12. 13.(14일간)
5. 기타사항은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이선화(Tel. 053-605-659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